

의안번호	2206115
의 퇴 인	이종욱 의원
회 답 일	2025. 3. 18.
추 계 번호	24A5297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공공조달 전략계획을 매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200만원, 2030년 5,2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억 6,000만원(연평균 5,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공공조달 전략계획 수립 (안 제9조)	52	52	52	52	52	260	52

주: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조달의 전략과 정책의 수립·집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
2	안 제8조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	○ 공공조달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의무 규정
3	안 제9조 (공공조달 전략계획 수립 및 변경)	○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공공조달에 관한 종합적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의무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14조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내 기업들이 해외 조달시장에 원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조성할 수 있고, 공공조달 관련 국제협력(국제 학술회의·전시회 등 개최, 해외 조달시장 진출 등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재량 규정
5	안 제15조 (공공조달의 특례 신설·변경)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공조달의 특례를 신설할 수 있다. 다만, 공공조달의 특례를 신설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적격성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
6	안 제16조 (공공조달의 특례 성과관리)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공공조달 특례의 운영 실적 및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성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기획재정부장관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조달의 특례에 관한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
7	안 제18조 (공공조달 교육훈련)	○ 공공조달기관의 장은 공공조달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역량개발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조달기관의 공공조달 업무 역량개발에 필요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량 규정
8	안 제19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조달 정책의 총괄·조정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조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업무수행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기관에 출연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재량 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 선언적·권고적 규정
2	안 제8조 (공공조달정책심의위원회)	×	○ 관련 현행 사업 존재 - 제정안은 현행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5조(조달정책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내용을 제정안 제8조에서 규정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3	안 제9조 (공공조달 전략계획 수립 및 변경)	○	—
4	안 제14조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및 국제협력)	×	○ 관련 현행 사업 존재 - 제정안은 현행 「조달사업에관한법률」 제28조(국제조달 협력 및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를 토대로 ①기획재정부장관의 기반 조성과 ②공공조달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으로 세분화한 것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5	안 제15조 (공공조달의 특례 신설·변경)	×	○ 선언적·권고적 규정 - 제정안에 따라 기술혁신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조달 계약시 특례를 적용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공공조달 특례의 범위와 수준을 예측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6	안 제16조 (공공조달의 특례 성과관리)	×	○ 관련 현행 사업 존재 - 조달청 “조달행정 역량강화(7132-366)”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조달사업 성과관리” 실시 중(’25예산안 기준 191백만원 편성)
7	안 제18조 (공공조달 교육훈련)	×	○ 관련 현행 사업 존재 - 조달청 산하 조달 전문 교육기관인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을 운영 중이며, 관련 세출사업으로 “조달 전문교육운영(7134-371)” 예산이 편성됨(’25년 예산안 기준, 1,984백만원)
8	안 제19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	○ 관련 현행 사업 존재 - 현재 조달청 세출사업으로 (재)한국조달연구원의 출연사업 운영(’25년예산안 기준, 2,968백만원 편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부칙 제1조에 따라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것을 전제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의 비용추계 대상은 안 제9조에 따른 “공공조달 전략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이며, 전략계획의 수립 비용은 연구용역비로 함
 - 조달청에서 발주한 전략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사례를 참조하여 제정안에 따른 공공조달 전략계획 수립 비용은 유사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사례의 연구용역비 평균(5,200만원) 수준이 매년 발생할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함

[표 2] 조달청에서 발주한 전략계획 수립 관련 연구용역 현황

(단위: 원)

연구제목	연구수행기관	수행연도	예산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적 조달정책 개선방안 연구	(사)한국정책학회	2023	19,550,000
국내-외 공공조달 동향과 변화관리 전략 연구	(재)한국조달연구원	2021	95,040,000
품목별 전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연구용역	(주)소프트아이텍	2019	67,600,000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재)한국조달연구원	2015	47,900,000
조달청 중장기 발전전략 및 중기업무 전략계획안 수립	(사)한국정책학회	2006	29,970,000
평 균			52,012,000

자료: 온-나라 정책연구(<http://www.prism.go.kr>)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제정안에 따라 공공조달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매년 실시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2.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3] 제정안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공공조달 전략계획 수립 (안 제9조)	52	52	52	52	52	260	5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태정립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태정립	02-6788-4652	jitae@assembly.go.kr